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6020
----------	------

제출년월일 : 2021. 7.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정이유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신기술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신기술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다. 신기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신기술 활용 인센티브와 면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5. 20. ~ 6. 9.(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1건(미반영) ※ 결과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신기술보유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정부인증신기술”과 “미인증신기술”로 구분한다.
가. “정부인증신기술”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한 별표 1의 신기술을 말한다.
나. “미인증신기술”이란 정부인증신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이 우수한 특허 공법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플랫폼”이란 신기술 등록과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하여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말한다.
3. “테스트베드”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신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 등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과 환경을 말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구광역시 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등의 계약심사부서의 장이며, 계약심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발주, 시공 등의 신기술 업무에 적용한다.

1. 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3. 구·군(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기술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이 사업에 선정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플랫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해당분야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2. 신기술을 검증하고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하여 발주기관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
3. 신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에 활용
4. 미인증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실증현장 제공, 정부 인증 지원 및 기술 판로 확대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신기술심의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 등록 및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별로 신기술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심의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시
 - 가. 신기술 등록에 관한 사항
 - 나.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구·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가. 신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심의회는 안전에 따라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당) 제6조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기술 활성화) 시장은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2. 타 기관과 신기술 업무협력 사업 추진

3. 신기술 관련 지역기술인 및 단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센티브) 시장은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시장은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테스트베드를 지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신기술보유자
2. 신기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부인증신기술(제2조제1호가목 관련)

1. 정부인증신기술 범위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환경신기술
-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 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신기술
- 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신기술
- 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신기술
- 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목재제품신기술
- 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계신기술
- 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다) “나)” 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1)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8. 2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구매를 권고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입하여야 한다.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③ 환경부장관은 환

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 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28., 2013. 7. 16.>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제2호의 기업체는 제외한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안은 신기술플랫폼 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신기술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신기술심사과장 정희대